

##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2000. 05. 02    개정 2007. 03. 01  
 개정 2013. 02. 28    개정 2015. 04. 07  
 개정 2015. 08. 3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0.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의 교육과정과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활동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① 교과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교무처장이 담당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개정 2013. 3. 1)
  2. 부위원장 : 대학교육혁신원장이 담당하며 위원장 부재시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한다. (개정 2013. 10. 1, 개정 2018. 10. 29)
  3. 위원 :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과(부)장이 추천하는 위원과 교양교육 담당교수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1)
  4. 간사 : 교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회의 기록 및 행정실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1)
-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산하에 소위원회로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전공교육과정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4. 7, 개정 2015. 8. 31, 개정 2018. 10. 29)
- ③ 교과 구분별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연구 개발을 위하여 학부단위, 학과단위, 전공단위, 교양(교직포함)단위로 분과별 교과과정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부서장이 되고, 교양분야는 교무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1)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7)

- ① 교육과정개선 (개정 2015. 4. 7)
  1. 교양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과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7)
  2.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7)
  3. 교양의 학점 배분 및 최저이수학점수 등 학점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7)
  4. 기타 교과과정에 관련된 사항
- ② 교수법개발 (개정 2015. 4. 7)
  1. 새로운 교수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개선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수법에 관련된 제반 사항
- ③ 강의 평가 (개정 2015. 4. 7)
  1. 강의평가용 설문지 개선에 관한 사항
  2.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강의평가 설문지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의평가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의 2 (전공교육과정위원회) 전공교육과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 4. 7)

① 교육과정개선

1. 전공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공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공의 학점 배분 및 최저이수학점수 등 학점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과과정에 관련된 사항

② 교수법개발

1. 새로운 교수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개선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수법에 관련된 제반 사항

③ 강의 평가

1. 강의평가용 설문지 개선에 관한 사항
2.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강의평가 설문지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의평가에 관련된 제반 사항

④ 실험실습기자재 선정 (신설 2017. 12. 26)

1. 전공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선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타 실험실습기자재 선정에 관련된 사항

제4조의 3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8. 31, 개정 2018. 10. 29)

① 비교과교육과정개선(개정 2018. 10. 29)

1. 비교과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과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29)
2. 비교과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29)
3. 기타 교과과정에 관련된 사항

② 성과평가 (개정 2018. 10. 29)

1. 성과평가용 진단도구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29)
2. 성과평가 시행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29)
3. 성과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29)
4. 기타 성과평가에 관련된 제반 사항 (개정 2018. 10. 29)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팀)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팀별회의는 팀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 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팀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